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71 제안연월일: 2025. 2.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국민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2425	이해식의원 등 11인	'24.7.3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15.)
	2203967	신동욱의원 등 10인	'24.9.1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15.)
	2205051	김윤덕의원 등 10인	'24.10.30.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15.)
	2205139	진종오의원 등 11인	'24.10.31.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15.)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21.)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 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 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 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을 각각 "노인과 유소년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저소득층의"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로 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u>노인</u> 체육의 진흥) ①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노인</u>	진흥) ① <u>노인</u>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	<u>과 유소년의</u>
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	② <u>노</u>
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	<u>인과 유소년의</u>
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	
다.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	③ <u>+</u>
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u>인과 유소년</u>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10. (생략)
-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신 설>

11의2. · 11의3. (생략)

12. (생략)

② ~ ④ (생 략)

-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 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 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 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 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10. (현행과 같음)
- 11. <u>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u> 계층의-----
-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 11의3. · 11의4. (현행 제11호의 2 및 제11호의3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

-----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 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을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 <u>금액에서</u>
제28조기	세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